은퇴설계의
6대원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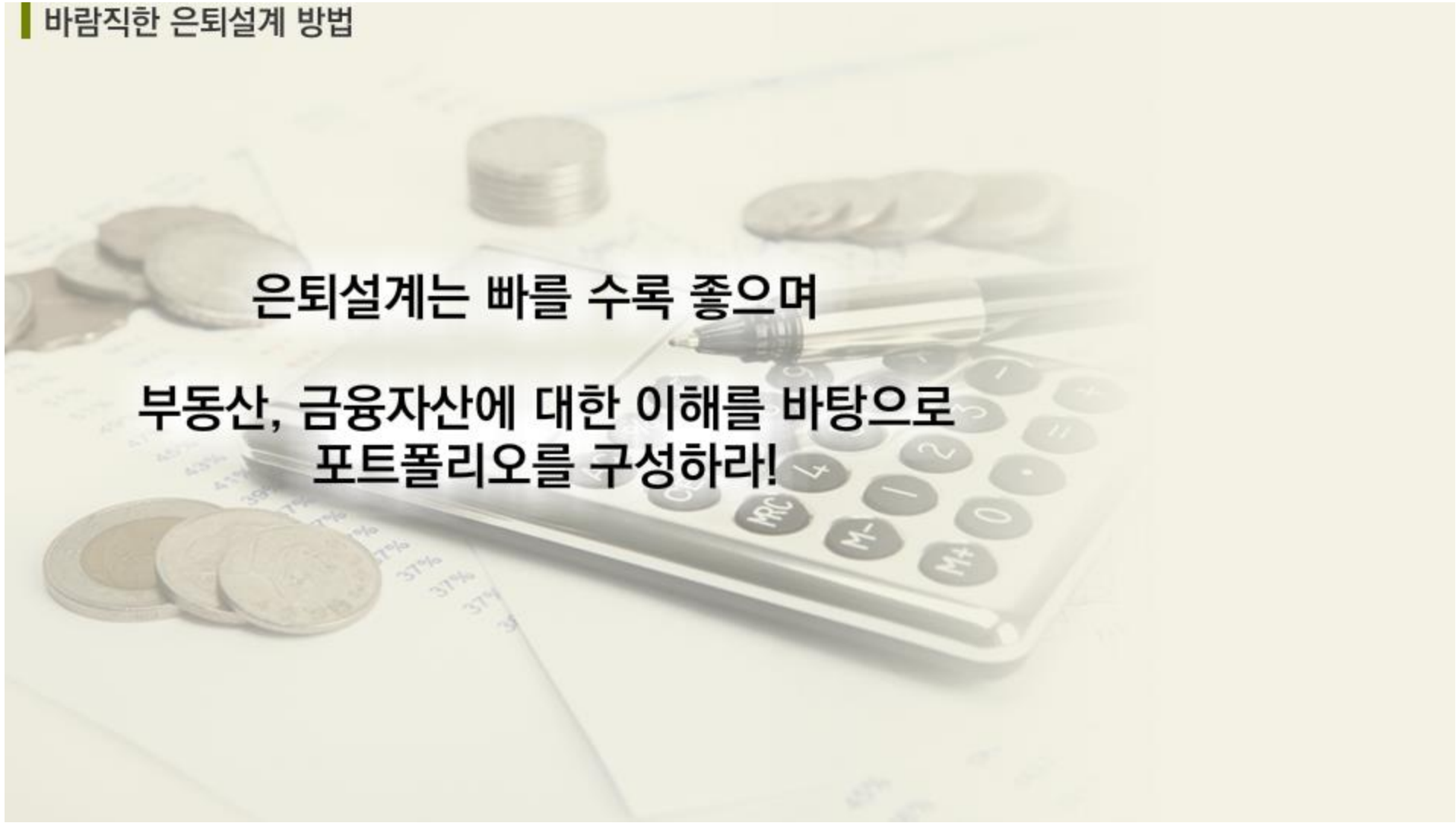

은퇴설계는 빠를 수록 좋으며

부동산, 금융자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
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!

은퇴자산 설계 시 유의점

유동성

- 유동성, 환금성 고려 시 금융자산이 더 적절

환금성

- 현금유동성 확보 후
  → 수익형부동산을 통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대비

현금유동성을 확보하지 않은 부동산 위주로 자산을 구성하는 것

매우 위험함

은퇴설계의 6대 원칙

1 부동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조정한다.

- 우리나라 대부분 가계 자산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음
- 자녀RISK(교육비 등)로 재산형성에 어려움이 따름
- 초고령화가 진행되며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기대하기 힘듦

→ 부동산의 투자수익률을 낮게 잡아야 함

은퇴설계의 6대 원칙

1 부동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조정한다.

- 부동산에 투자할 시 가치하락을 대비해 출구전략이 필요!
- 초고령화 사회 도래로 소득, 구매력 감소
  → 유동성의 감소
-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의 도래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치를 고려해야 함

2020년 '역피라미드' 인구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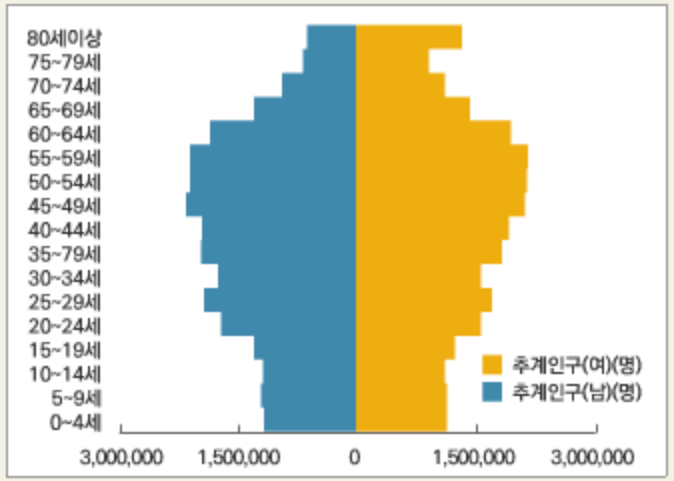

주 : 베이비붐 세대들이 50대로 접어드는 2020년의 인구구조

❖ 자료 : 통계청,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

은퇴설계의 6대 원칙

1 부동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조정한다.

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은 40, 50대 연령층이
본격적으로 은퇴자 대열에 합류

-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부동산 매각
- 동시에 매각이 진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클 수 있음

투자목적의 부동산은 줄이되,
주거용 부동산은 끝까지 보유

은퇴설계의 6대 원칙

1 부동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조정한다.

- 주거용 부동산이 없을 경우, 주거비(월세) 발생
- 노년에 이사를 다니는 것은 불가능
- 은퇴자금이 모자랄 경우, 역모기지론 활용

→ 주거용 부동산은 끝까지 보유

주거용 부동산은 끝까지 보유하고 투자목적의 부동산은 줄여라!

은퇴설계의 6대 원칙

2 연금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.

- 은퇴설계의 목표 : 돈 걱정 없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 것

→ 일정하게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자산 등과 같이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필수

→ 일정액의 연금수령권 확보가 중요

국민연금 + 퇴직 연금 개인연금

은퇴설계의 6대 원칙

2 연금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.

여유자금을 확보한 계층

- 즉시연금이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
  - 즉시연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세테크 수단이 될 수 있음
  - 즉시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받을 경우 세법상 소득에 해당 되지 않음

"향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로 즉시형 연금 인기 예상"

은퇴설계의 6대 원칙

3 세금과 수수료를 최소화해야 한다.

부동산 보유에 따른 과세 강화

- 소득기반이 축소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될 가능성 높음

임대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

금융자산운용에 대한 수수료

세금과 수수료 부담이 적은 투자수단을 선택하라!

은퇴설계의 6대 원칙

4 장기간 운용되는 상품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- 수시로 재투자할 경우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

  →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피해를 볼 수 있음

- 최소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 가능한 자산을 선택

  →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더욱 유리

은퇴설계의 6대 원칙

5 은퇴설계 시에는 배우자를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.

- 은퇴설계 시 여성(배우자)의 수명이 길다는 것을 감안해 은퇴 생활자금을 준비
- 남편이 사망할 시 부부생활비 50~60% 정도의 생활자금을 준비
- 배우자 별로 연금 가입, 부부형 종신연금 가입을 통해 재산의 일부를 미리 증여

은퇴설계의 6대 원칙

6 장기간에 따른 물가상승(인플레이션)의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.

물가 ↑ 화폐가치 ↓ 구매력 ↓

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을 감안해 은퇴설계 하라!

은퇴설계 시
고려해야 할 기타 원칙

은퇴설계를 위한 고려요소 – 재무적 설계

은퇴를 위한 준비 — 재무적 설계

재무적 설계

- 경제적 안정
  - 경제적 안정을 통해 의료 서비스 등 필요한 지출이 가능
- 경제적 안정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누릴 수 있음

은퇴설계를 위한 고려요소 – 재무적 설계

은퇴를 위한 준비 — 재무적 설계

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한 것이 '돈'

젊은 시절의 1000만원 ≠ 은퇴 후1000만원

같은 돈도 은퇴 전·후에 따라 그 무게가 달라지므로
수입이 있을 때 돈을 축적하라!

은퇴설계를 위한 고려요소 – 비재무적 설계

은퇴를 위한 준비 — 비재무적 설계

- 재무적인 자금설계만큼 중요한 것이 일과 건강 (비재무적 요소)
- 재무적, 비재무적인 요소의 조화가 필요
- 은퇴설계 시 필요한 4대 요소

일(직업) | 건강 | 노후자금 | 인적 네트워크

은퇴설계 시 필요한 4대 요소

- 일(직업)을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음
- 일(직업)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도모됨
- 노후 자금도 일에 의해서 상당 부분 확보됨
- 저금리 시대에 작은 수입도 큰 가치
  - 1억 원을 은행에 넣어도 월 이자가 10만원 이하

끊임없이 일을 하는 것이 은퇴설계에서 중요한 요소

은퇴설계 시 필요한 4대 요소

-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능력을 발전시키거나 은퇴 후 할 일을 사전에 준비
- 일을 통해 건강을 유지, 인적 네트워크 형성, 수입 발생

반퇴 은퇴 후에도 은퇴자금 마련 등의 이유로 계속 일을 하는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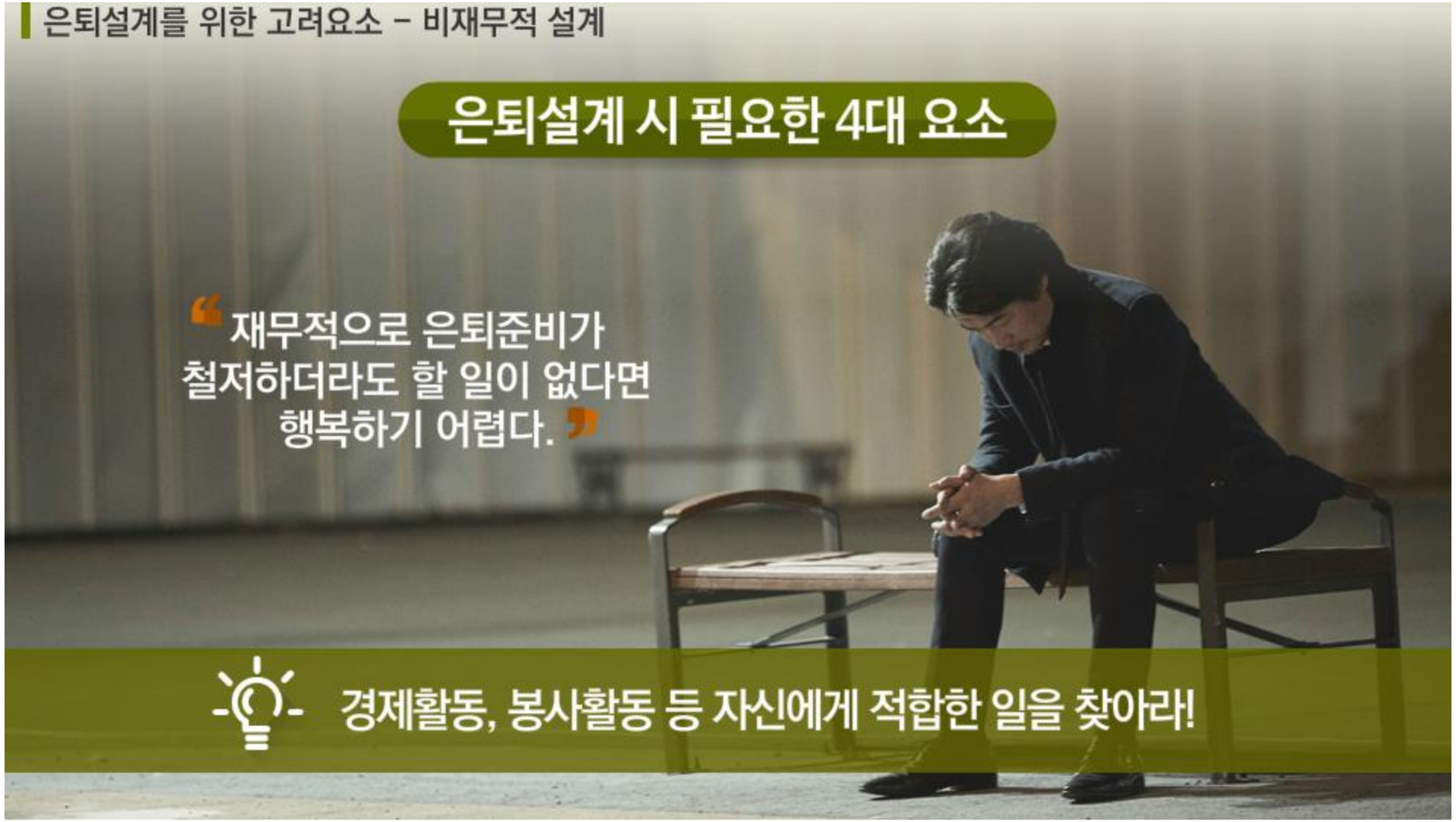
은퇴설계 시 필요한 4대 요소
"재무적으로 은퇴준비가 철저하더라도 할 일이 없다면 행복하기 어렵다."
경제활동, 봉사활동 등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찾아라!

은퇴 컨설팅의 방향

- 재무적 설계만으로는 은퇴 후의 삶에서 균형을 도모할 수 없음
- 돈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충분조건이 되지 못함

→ 은퇴설계는 재무적 설계와 비재무적 설계 간의 적절히 균형이 필요함

재무적,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컨설팅을 고객에게 제공하라!

은퇴설계와 재산이전의 관계

은퇴설계 : 나만을 위한 설계

재산이전설계 : 상속을 위한 설계

→ 통합설계

Ex

- 자신이 은퇴할 때까지는 보장형 종신보험으로 유지하다가 은퇴시점에 연금으로 전환하여 연금 수령

→ 연금액수는 줄어들지만 하나의 보험으로 2가지를 한꺼번에 해결 가능

은퇴설계와 재산이전설계의 통합적 운용

1 은퇴 이전까지는 보장형 종신보험으로 유지하다가 은퇴시점에서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식

- 은퇴시점까지 본인 생존 시 불입 보험료를 연금으로 지급

→ 보장자산과 은퇴자산이 한 번에 마련할 수 있는 장점

2 연금으로 설계하되 상속형으로 하는 방법

- 은퇴기간 중 매월 연금 수령, 사망 시점에서 적립 금액을 상속인이 수령

→ 은퇴설계와 이전설계가 동시에 가능

고객(자신)이 원하는 방향에 맞게 금액의 비중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음

은퇴설계와 재산이전설계의 통합적 운용

계약자

피보험자

수익자

- 본인 불입 보험료를 토대로 연금개시 시점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연금 수령
  → 증여의 문제 성립되지 않음
  (다만, 사망 시점에서 법정 상속인들이 일시금을 수령할 시, 상속세 과세대상)
- 상속형 연금은 종신형 연금과 유사함
  (단, 사망 시 납입보험료 일부를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는 것 제외)

은퇴설계와 재산이전설계의 통합적 운용

계약자

피보험자

수익자

- 재산이전 목적의 설계가 됨
- 연금개시 시점~사망 시까지 배우자나 자녀가 매월 연금 수령
- 본인 사망 시에도 배우자나 자녀가 보험금 수령

  →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함

은퇴설계와 재산이전설계의 통합적 운용

- 자녀 사망 시까지 자녀가 연금 수령 가능
- 자녀가 계약자지만,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보험료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

→ 증여세 과세

증여세의 과세 시점

보험을 가입한 현재 시점이 아닌
연금수령이 개시되는 미래시점

✔ 증여재산은 연금의 현재가치에 상응하는 재산

연금 유형별 과세기준

확정형

- 연금수령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음
- 수령기간 동안 자녀가 받을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하여 (약 3.5%) 매년 일정한 연금 액수를 가입 당시 금액으로 환산해서 증여세를 부과

연금 유형별 과세기준

종신형

- 사망 시기 예측 불가
- 기대여명 연수까지의 수령 연금을 현재가치로 계산
- 자녀가 실제 기대여명 연수 이후까지 생존하여
  연금 수령 시 그 기간의 수령액에는 증여세 비과세

연금 유형별 과세기준

종신형

조기사망에 따른 문제점(최저지급보증기간의 문제점)

- 일찍 사망했을 때 연금 자산을 충분히 받지 못함
  → 최저지급보증기간을 설정

최저지급보증기간

실제 사망시기와 관계없이
최저지급보증기간 동안은
연금지급을 무조건 보장하는 것

연금 유형별 과세기준

종신형

조기사망에 따른 문제점(최저지급보증기간의 문제점)

- 기대여명 이후 연금수령을 하였을 경우
  - → 보증기간 만료 시점까지 연금수령액을 모두 과표에 넣음

기대여명 연수가 80세, 실제 최저지급보증기간이 83세일 경우 증여세의 과세기준은?

→ 83세까지는 연금 지급이 보장되므로 그 기간까지의 연금 액수는 모두 증여재산에 포함됨

연금 유형별 과세기준

종신형

최저지급보증기간이 20년인 종신형 연금이 있다. 만약 65세에 연금 수령이 개시된다면 20년 후에 현재가치로 환산되는 연금액은?

- 기대여명 연수와 상관없이 85세까지 수령 연금 총액이 현재가치로 환산됨
- 85세까지는 연금지급을 보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전체 금액은 포함
- 기대여명이 87세라고 한다면 당연히 87세까지의 연금수령액이 카운트됨

연금개시 시점을 앞당겨 최저지급보증기간과 연금개시연령의 합이 기대여명과 같거나 짧게 하는 것이 유리